

공무직 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

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할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합격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6월 25일

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장

☐ 최종합격자

* 개별연락

- 시설물청소원 : 편○정(5058)
- 연구원 라급(보존과학) : 박○은(5250)
- 연구원 가급(아카이브) : 정○진(0645), 박○영(6474)

☐ 예비합격자

- 시설물청소원 : 김○조(5058)
- 연구원 라급(보존과학) : 이○희(2062)
- 연구원 가급(아카이브) : 박○영(4615)

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○ 제출기간 및 방법 : 2026. 6. 30.(목) 18: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제출

- 주소 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56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
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

○ 제출서류

- 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상세) 각 1부
- ② 일반건강검진결과서 1부
- ③ 반명함 사진(3×4) 1매
- ④ 주민등록등·초본 1부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군경력 포함
- ⑤ 통장사본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- ⑥ 결격사유 확인서 1부 ※ [서식 1] 참조
- ⑦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※ [서식 2] 참조
- ⑧ 공정채용확인서 1부 ※ [서식 3] 참조
- ⑨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

□ 공지사항

-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.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및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 ☎ 055-211-9051

□ 채용서류 반환 안내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응시자(최종합격자 제외) 반환 청구기간 범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 내 반환이 청구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절차에

따라 파기합니다. 단, 서류 원본에 한하여 반환하며(사본은 채용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) 반환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.

-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: 2026.6.26. ~ 7. 7.

-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[붙임 4]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(또는 이메일)을 통해 발송하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.

- 붙임
1. 결격사유 확인서 1부.
 2.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.
 3. 국가유산청 공정채용확인서 1부.
 4.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. 끝.

[붙임 1]

결격사유 확인서

○ 성 명:

○ 생년월일:

본인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공무직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6. 4. .

확인자:

(인)

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

■ 국가유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8호 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국립가야문화유산 연구소	채용방법	일반경쟁채용	채용직위(직급)
	채용사유	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결원에 따른 채용			
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	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6년 4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국가유산청 공정채용 확인서

우리 기관은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(17.7.20.)」에 따라 기간제·파견·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(무기계약직)을 추진하였습니다.

이후, 「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」를 위한 지침(18.11.1./고용노동부)과 「문화재청 공무원 등 근로자 공정채용 확립 추가 방안(18.11.7.)」에 따라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2017.5.12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,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- [illegible]

<< 작성예시 >>

- ①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접근편의성 ② 평소 관심 있어 하는 분야
③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발표에 따른 전환 희망 ④ 기타사유 등 상기 사유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재

3. 국가유산청 및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
다면 ()촌 이내의 관계로, ()에 근무 중인 (성명 :)이다.

- 3-1. (3번 답변 응답자만 작성) 친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자가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(생각한다./생각하지 않는다.)

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, 추후 작성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계약해지 등의 관련 절차에 따르겠습니다.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·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26 . 4. .

확인자 : (서명/인)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고지

 - ① 수집·이용 목적
 -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「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」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, 감사자료 작성
 - ② 수집·이용 항목
 - 성명, 소속, 직종, 소속기관 입사일자, 입사방식, 문화재청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, 성명
 - ③ 보유기간 : 재직기간동안 보유

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
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26년 4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